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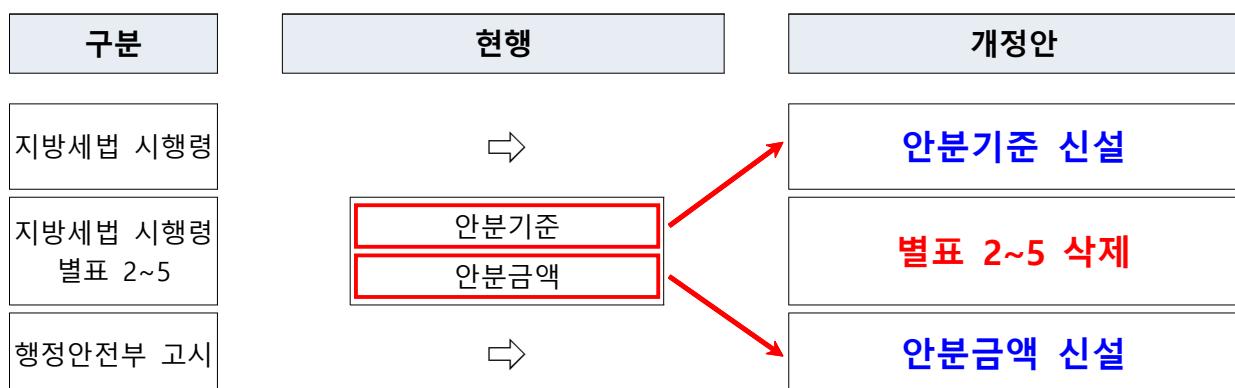
① 개정 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의 '안분기준'과 '안분금액'을 시행령 별표2~5에서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시행령 개정) ○ (고시 신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2~5 삭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별표 2~5의 안분기준 : 「지방세법시행령」 본문에 규정 ○ 별표 2~5의 안분금액 :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

□ 개정 내용

-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'안분기준'은 '시행령'에 상향 규정하고, '안분금액'은 '행정안전부 장관 고시'로 위임

<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금액 위임 규정 변경>



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

|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0조(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75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